

제317회 임시회
2013. 01. 31.(목)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01.31.(목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 : 2010년 03월 15일

다. 승계일자 : 2010년 09월 01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01월 21일

(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국장 정가홍)

가. 제안이유

- 학원의 심야 교습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며,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

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유치원생·초등학생·중학생은 밤 11시,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여 제한하고자 함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김왕년)

- 본 조례개정안은 (구)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010.3.22. 제238회 임시회 심의결과 『학생들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경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개인 고액과외 및 불법과외가 성행할 수 있는 여지와 자율학습권 침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』이 있어,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어 계류 중에, 동년 9월 1일 (구)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 교육위원회로 승계됨.
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학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근거하여 현행 유치원생·초등학생·중학생은 밤 11시,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모두 밤 10시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.
- 도내 초·중·고 학생 및 학부모, 교원, 운영위원 등 총 21,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.(2009.10.23.~11.5. 도교육청 조사)

구 분	응답자수	찬 성		반 대	
		인원	비율	인원	비율
전체평균	21,556	14,598	67.7%	6,958	32.3%
학 생	11,189	6,984	62.4%	4,205	37.6%
학부모	8,634	6,204	71.9%	2,430	28.1%
교원	1,014	822	81.1%	192	18.9%
운영위원	719	588	81.8%	131	18.2%

- 금번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22시로 제한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, 청소년 심야 유해환경 및 각종범죄로부터 보호,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생각됨.
- 다만, 교습시간 제한에 따라 고액 비밀과외와 학원 운영의 위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이 필요하며, 또한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학원, 교습소, 교육청 등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7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대비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함.

나. 수정내용

- 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로 한다.

※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----- [별첨 2]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10. 첨부서류

가. 개정조례안(수정안 포함) : [별첨 1]

나.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[별첨 2]

[별첨1]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 포함)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)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:00부터 **22:00**까지로 한다. 다만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)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:00부터 23:00까지로 한다. <u>다만,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:00까지로 하며</u>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</p> <p>② 삭제</p>	<p>제4조(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)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:00부터 22:00까지로 한다. 다만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</p>

[별첨2]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11년 01월 21일

제안자 : 하재성 의원

가. 수정이유

-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대비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함.

나. 수정내용

- 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로 한다.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「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

“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

“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)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:00부터 23:00까지로 한다. 다만,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:00까지로 하며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</p> <p>② 삭제</p>	<p>제4조(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)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:00부터 22:00까지로 한다. 다만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</p> <p>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
제16조 (지도·감독 등)

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[별표 1] 고등학교		[별표 1] 고등학교	
명 칭	위 치	명 칭	위 치
<u>충주농업고등학교</u>	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88	<u>국원고등학교</u>	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88
<u>미원공업고등학교</u>	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초정로 27	<u>충북에너지고등학교</u>	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초정로 27
<u>학산정보고등학교</u>	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학산양산로 12	<u>학산고등학교</u>	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학산양산로 12
<u>증평정보고등학교</u>	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98	<u>증평정보고등학교</u>	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32
<u>단양공업고등학교</u>	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상하리길 69	<u>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</u>	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상하리길 69
[별표 3] 중학교		[별표 3] 중학교	
명 칭	위 치	명 칭	위 치
<u>청산중학교</u>	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길 2-27	<u>청산중학교</u> <u>청산로 88</u>
<u>증평여자중학교</u>	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98	<u>증평여자중학교</u> <u>중앙로 132</u>
<u>목도중학교</u>	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청덕1길 50-15	<삭 제>	<삭 제>
<u>장연중학교</u>	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 오가2길 32	<삭 제>	<삭 제>
<u>감물중학교</u>	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맹이재로 611-7	<삭 제>	<삭 제>
<신 설>	<신 설>	<u>괴산오성중학교</u>	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창로 56

현 행	개 정 안
-----	-------

[별표 4]
초등학교

명 칭	위 치
<u>노은초등학교</u> 수상분교장	<u>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</u> <u>감노로 1055</u>
동명초등학교	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77
<신 설>	<신 설>
내북초등학교	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6225-15
<u>진천삼수초등학교</u> 매산분교장	<u>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</u> <u>산삼로 46</u>
<u>보광초등학교</u> 화곡분교장	<u>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</u> <u>모래재로 941</u>

[별표 4]
초등학교

명 칭	위 치
<삭 제>	<삭 제>
동명초등학교 천남동 9-45
청원초등학교	<u>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</u> <u>과학산업3로 230</u>
내북초등학교 화전길 20
<삭 제>	<삭 제>
<삭 제>	<삭 제>

[별표 6]
유치원

명 칭	위 치
동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77
<신 설>	<신 설>
내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	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6225-15
<u>진천삼수초등</u> <u>학교매산분교</u> 병설유치원	<u>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</u> <u>산삼로 46</u>

[별표 6]
유치원

명 칭	위 치
동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천남동 9-45
청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	<u>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</u> <u>과학산업3로 230</u>
내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화전길 20
<삭 제>	<삭 제>

관계법령 발췌

□ **교육기본법** [법률 제8915호, 2008.3.21.]

제11조 (학교 등의 설립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
을 설립·경영한다.

② 법인이나 사인(사인)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
을 설립·경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7.12.21]